

2023년 효율향상사업 『복지시설 냉난방기』 지원 공고

(2023년 2차 : 시행일 2023. 4. 3)

1. 사업개요

-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효율 기기 설치 지원

2. 지원대상

- 노인복지법·아동복지법·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시설

■ 제외대상

- 방문서비스 시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
- 복지용구 시설(판매, 대여 등)
-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(EE사업) 참여고객
- EE사업 외 타 기관 지원사업 참여고객
 - 단, 타 기관 지원사업 지원금과 한전의 효율향상지원금 합계가 고효율기기 가격의 10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(관련 증빙첨부 필수)
-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효율향상사업으로 지원받는 고객
-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고객
- 지원사업 접수일 이전 설치 고객
- 건설현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다른 장소에서 이전하여 재사용 또는 중고품 설치시

□ (지원기기) 고효율 냉·난방기 4개 품목

품 목 명		효율등급	기준시행일	
냉방기	정격냉방능력 4,200W이하 벽걸이형	1	2018.10.1	
	정격냉방능력 10,000W이하 스탠드형			
	정격냉방능력 2,700W이하 창문형			
	그 외	2 ~ 3		
냉난방기	정격냉방능력 3,600W이하 벽걸이형	1		
	정격냉방능력 6,000~14,500W 천장형			
	정격냉방능력 5,200~8,300W 스탠드형			
	그 외	2 ~ 3		
멀티히트펌프시스템 (EHP)실외기	전 체	1		
축열식 히트펌프로보일러*		한국전력		승인규격품

* 히트펌프로보일러는 계약종별 심야전력(갑) 고객 대상임

-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: 구매일 기준 해당 모델이 한국에너지공단 1등급 등록 제품이어야 함(붙임 3-1 참고)
- 소비효율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2~3등급 임시지원(붙임 3-2 참고)

구 분	주 요 내 용
지원기간	2023. 1. 9 ~ 한국에너지공단 1등급제품 등록 시까지(미정)
지원품목	1등급 미출시된 냉방기, 냉난방기 일부 품목

※ 냉방기(스탠드형 9개 품목) 및 냉난방기(천정형 21개 품목, 스탠드형 3개 품목)에 대한 지원중단 예정(지원사업신청서 4월 1일 접수분부터)

- 한국전력 승인규격품(붙임 3-1 참고)

구 분	주 요 내 용
제조회사(1개)	오텍캐리어
승인품목(2개)	15kW급 2개

3. 지원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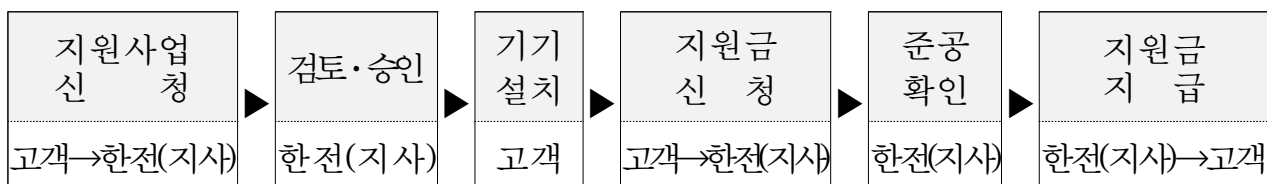
구 분	지원금	지원한도
금 액	냉·난방기 구입 제품가격의 50%	시설당 16,000천원

- 냉방기, 냉난방기의 구입 제품가격 산정 시 기본설치비만 포함(추가설치비 미포함)
- 고효율 냉·난방기 모델별 지원한도 존재
- 사회복지시설당 16,000천원 한도
 - 예) 히트펌프 10,000천원 x 2대, 에어컨 3,000천원 x 2대 교체 시
총 26,000천원 ⇒ 총 구입비의 50% 13,000천원 지급
 - 예) 히트펌프 10,000천원 x 2대, 냉난방기 5,000천원 x 3대 교체 시
총 35,000천원 ⇒ 총 구입비의 50% 17,500천원 중 16,000천원 지급(지원한도 범위내)
- 지원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, 과거년도 포함 시설당 지원받을 수 있는 교체 한도임
 - 예) '22년 10,000천원 지원 받았을 경우, '23년은 6,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

4. 사업예산 및 신청기간

- (사업예산) 4,500백만원
- (신청기간) 2023. 1. 9(월) ~ 2023. 12. 15(금)(예산 소진 시 종료)
- (신청방법) 방문, Fax,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 -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, Fax, 우편으로 서류 제출
 - 한전 홈페이지 > 사이버지점 > 개인 또는 법인 수요관리 > 사업신청
- (지원금 신청)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(단 신청마감일은 23.12.15(금)까지)
 - 상기 기한 내 지원금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취소 처리

5. 사업절차



6. 유의사항

- ☐ (지원금 회수) 고객 또는 사업자가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경우
- ☐ (부정청구 제재)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의 부정청구 행위를 한 경우
 - 지급예정인 지원금 지급중단 또는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
 - 부정청구 유형별 제재부가금

유 형	부정이익	제재부가금
• 무자격자의 지원금 청구	지급된 지원금 전체	부정이익 × 500%
• 지원금 과다청구	과다지급된 지원금	부정이익 × 300%
• 지원금 목적 외 사용	목적 외 사용된 지원금	부정이익 × 200%
• 지원금 오지급	잘못 지급된 지원금	-

- 제재부가금 부과를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
관계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부정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
- ☐ 종교시설 내 여가복지시설은 해당 장소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
- ☐ 지원금은 해당 사회복지시설 시설명의로 계좌로만 지급
- ☐ 사회복지시설에서 물품 구매한 것이 구매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함
- ☐ 구매증빙 서류 중 구매계약서는 직인날인, 영수증은 정상 승인분만 인정

7. 기타사항

- ☐ (신청서류) 본 공고문 붙임 양식 참고
 - 한전 홈페이지(www.kepc.co.kr) > 사이버지점 > 개인 또는 법인 수요관리
 - 지원사업 신청서,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·사업자등록증 사본
 - 지원금 신청서, 구매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계좌이체확인증 등)
 - 설치현장 사진(설치 전·후 전경, 기기명판, 에너지소비효율라벨 등)
 -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 본사 설치(구매)계약서 및 설치안내 확인서
 - 일반사업의 절차를 따르므로 계약전력 신규 및 일부해지 서류제출 필요

- ☐ (문 의)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담당자(붙임 4 참고)
- ☐ (기기정보)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참고(<http://eep.energy.or.kr>)